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87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전용기 · 이용선 · 장종태
이기현 · 손명수 · 김준혁
김원이 · 염태영 · 차지호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수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설립 목적도 단순 '지원'에서 사업 '활성화'로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개발사업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4제1항).

또한 KIND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구

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제28조의10 삭제 등), KIND의 사업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안정성을 위하여 차입 대상에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3 신설 등).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지원하기 위하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2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28조의10을 삭제한다.

제28조의12를 삭제한다.

제28조의18제1항 중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을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장에 제28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3(손익금의 처리) ① 지원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② 지원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럼에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u>지원하기 위하여</u>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u>설립할 수 있다.</u>	제28조의2(설립 등) ① ----- ----- ----- <u>활성화하기 위하여</u> ----- ----- ----- <u>설립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u>2조원</u> 으로 한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 ----- <u>15조원</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① <u>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u>	<u><삭 제></u>
② <u>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u>	
③ <u>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u>	

현행	개정안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삭 제>
제28조의18(차입) ①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의18(차입) ① ----- ----- -----

현행	개정안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u>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3(손익금의 처리) ① 지원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② 지원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럼에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보전하고도 부족한

현행	개정안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